[서식1호]

**학생회 선거규정**

제정 1996.9.1

개정 2000.9.1

개정 2007.9.1

개정 2011.1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회 선거 시행규칙이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회칙 제26조에 의거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의 관리 하에 회원이 직접 선거한다.

제4조 (선출시기) 선거는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실시하며, 2학기 중 실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제5조 (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자치회비에서 지출한다.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6조 (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 중 학생회칙 제3조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피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 중 학생회칙 제25조에 해당하는 회원 중 다음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총·부 학생회장, 과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각 부장의 자격 기준은 학생회칙 제20조, 25조, 31조에 의거하여 임명 직전 학기 학점이 3.0 이상으로 과목실격이 없는 자로서 학칙 및 기초생활질서 위반 조항을 포함한 상벌규정에 의거 불이익이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8조 (보궐선거) 총·부 학생회장, 스쿨 학생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 (구성)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선거관리 위원은 전공대표로 한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공대표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그 임기는 선거일 공고 10일 전부터 당선 후 결과 공포일까지로 한다. 단, 당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반 업무가 마감 될 때까지 연장된다.

제11조 (업무 및 권한)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담당한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 서류 접수 및 자격심사

3. 입후보 마감 결과 공고 업무

4.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후보 자격 정지

5. 선거운동 방법 및 일시, 장소 조정

6. 선거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7. 선거결과 선포 및 공고 업무

8. 기타 선거와 관련된 업무 일체

제12조 (의결) 선관위 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내부규정) 선관위의 내부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선거기간에만 유효하다.

제14조 (금지사항)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자격을 정지한다.

제4장 후보등록, 공청회, 투표, 개표 및 당선

제15조 (후보등록 절차) 총․부 학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 신청서 1부 (양식 1호)

2.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양식2호)

3. 선거공약을 포함한 입후보자 소견서 1부 (양식 3호)

4. 반명함판 사진 2매

제16조 (입후보 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등록 마감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고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부터14일 이내에 재공고 한다.

제17조 (후보기호) 입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선관위 입회하에 후보자들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8조 (공청회) 총․부 학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 참가하여 소견과 공약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 (선거일) 선거일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투표장소와 함께 투표 7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20조 (선거인명부) 선관위는 투표일 7일 전 일자를 기준으로 본 규정 제6조의 선거권이 인정된 회원의 인명부를 학생복지처로부터 인계 받아 열람 가능토록 한다.

제21조 (투표) 선거인은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 내에 투표소에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와 대조 후 확인 날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기표용지를 수령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한다.

제22조 (투표소) 투표소 내에는 선관위원과 후보자별 참관인 1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23조 (참관인) 각 후보자는 투표 2일 전 까지 참관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참관인은 투표 시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참관인 명단은 교체사유 발생시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교체 할 수 있다.

제24조 (개표) 선관위는 후보자 참관인 후보자 참관인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개표를 개시한다.

제25조 (개표소) 개표소에는 선관위원과 후보자 참관인 각1인, 방송동아리 1인 이상, 학생지도 담당 직원 2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제26조 (무효표) 유효 및 무효표의 기준은 당해 연도 선관위에서 따로 정하여 제18조 선거일과 함께 공고한다.

제27조 (당선)

1. 선관위는 경선일 경우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단, 당선자가 없을 경우 3회까지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없을 경우 차기 년도로 이월한다.

2.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 총유권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인수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 (이의신청)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후보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이 선관위의 2/3 이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당선 보류 및 취소를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선거 재공고와 함께 선거업무를 재개한다.

제29조 (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일 이내에 당선을 공고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9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공고 당일부터 행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금한다.

2.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모든 홍보, 게시, 유인물은 선관위가 정한 규격과 수량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선관위의 날인을 득 하여야 하고 특정 후보 비방은 할 수 없다.

3. 2항에 위배된 홍보물은 선관위의 명령에 따라 원인과 관계없이 해당 후보자가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6장 스쿨학생회장 선거규정

제30조 (목적) 본 규정은 전공별로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 (선거규정) 스쿨학생회장의 선거규정은 총학생회 선거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스쿨별로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